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24
------	------

2024.03.0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3월 5일, 장태용 의원(찬성자 15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3.5.) 상정,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장태용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의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아카데미 시상식 등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이루어진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존재함.
-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영상제, 시상식의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제’에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 까지 확대하고, 해당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 조직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영상제 시상식 및 부대행사 지원 근거 마련

- 서울시는 2006년부터 영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상업·비주류(독립·예술영화, 장르영화, 장애인영화 등) 영화제를 지원하는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사업’ 을 시행해 왔음.
- 이후 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화제’ 를 ‘영상제’ 로 확대하고 영상산업의 범위에 ‘드라마·광고·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 관련 산업’ 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개정(2019.1.3.)되면서, 지원사업의 명칭도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사업’ 으로 변경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최근 3년간 16개 영상제에 53억 8천 8백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에 15억 2백 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 사업’ 을 신설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영화제명	2021(7)	2022(9)	2023(15)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110	126	100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	-	40
서울국제음식영화제	40	64	40
서울인디애니페스트	110	144	115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50	96	75
서울국제건축영화제	-	-	70
서울동물영화제	-	20	27.5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	-	290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	-	250
서울독립영화제	330	370	37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780	774	750
대한민국 대학영화제	-	10	10
여성인권영화제	-	-	20
카톨릭영화제	-	-	20
성북청춘불패영화제	-	-	10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80	96	-
계	1,500	1,700	2,188

※ 2021~2022년 자치구 선정 우수영화제 지원은 제외

- 이 중 ‘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대규모 영화제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비상업·비주류 영화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행사를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새로운 영화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대중상 등 인지도가 높은 영화시상식¹⁾을 지원하는 방안이 행·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종전의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과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영화제를 비롯한 영상제에 대한 지원근거만 존재하여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이나 부대행사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제와 영상산업 관련

1)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개봉예정이거나 개봉되지 않은 다양한 영화를 일정기간 동안 상영하면서 필름마켓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지만 영화시상식은 이미 개봉된 영화와 출연 배우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위주로 진행되며 국내 3대 영화상(대중상,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은 모두 영화시상식임. 다만, 칸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는 시상식을 겸하고 있음.

시상식 및 부대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2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1일

발 의 자: 장태용, 김규남, 김동욱,
김지향, 박상혁, 서상열,
신복자, 이상욱, 이숙자,
이희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16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영상제'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등의 해외 유수의 영화제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아카데미 시상식 등과 같이 영화상영 행사 없이 시상식으로만 이루어진 영상산업 관련 행사도 존재함.
- 따라서 기존의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영상제, 시상식의 부대행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영상제의 지원)”을 “(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상제”를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제”를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로 하고, “영상 관련 조직위원회”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영상제의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u>영상제</u>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u>영상제</u>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u>영상 관련 조직위원회</u>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p>제6조(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① - ----- ----- --- <u>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u>----- ----- .</p> <p>② -----<u>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u>-----<u>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u>----- ----- ----- .</p>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제1항은 '영상제'가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로 변경되어 비용이 발생하나, 2024년부터 기 편성되어 추진중이며,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024년 서울시 영화 시상식 및 영상제 지원 사업 예산〉

사업명	세목	예산액(천원)
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 사업	(100-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서울시 영화 시상식 지원	800,000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00-307-04)민간행사사업보조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500,000

(참고)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